



## 뉴욕주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에 대한 간단한 소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방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격이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및
- Form IT-209(양식 IT-209)(영어버전만 이용 가능)를 사용하여 자녀 비양육 부모에 대한 뉴욕주 근로소득 세액공제(Noncustodial Parent New York State Earned Income Credit)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연방 세액공제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IRS) EITC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식별 번호

2015년 12월 18일 이후 신고한 유효한 세액공제 청구에 대해 귀하 및 귀하의 자격 있는 자녀의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신고 마감일(연장 기간 포함)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공제액은 허용되는 연방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30%에서 청구한 가구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본 세금공제를 신청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Form IT-215(양식 IT-215), Claim for Earned Income Credit(근로소득 세액공제 청구하기)* 및 관련 지침 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영어버전만 이용 가능).

### 자료보관 의무사항

본 공제를 청구할 경우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공제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해당 연도 동안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매일의 사업 소득 및 사업 지출액을 나타내는 장부 및 기록문서. 본 기록문서에는 반드시 총소득, 사업 지출액 및 자산과 재고의 구매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 은행 명세서, 입금 전표, 지급 완료 수표, 송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Form 1099-MISC(양식 1099-기타)와 같이 장부 및 기록문서의 각 항목에 대한 입증 문서.

자료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보관 의무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Form DTF-215(양식 DTF-215), Recordkeeping Suggestions for Self-employed Persons(자영업자에 대한 자료보관 제안사항)*(영어버전만 이용 가능)를 참조하십시오.

**유의 사항:** 이 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환급 처리될 것입니다. 단, 1년 내내 거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